
석유화학 자율과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

2016. 4

☐ ☐ 목 차 ☐ ☐

I. 사업개요	1
1. 과업개요	1
2. 추진배경 및 필요성	1
II. 과업내용	2
1. 주요내용	2
2. 추진일정	4
III. 행정사항	5
1. 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방식	5
2. 과제수행자의 의무	5
3. 성과물 제출	7

I. 사업개요

1. 과업개요

- 과업명 :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및 에너지 계획 수립을 위한 예상성장률 Good Practice
- 총사업비 : 30,000천원
- 용역기간 : 계약일로부터 ~ 2016.11.30
- 사업주관 : 한국석유화학협회
- 사업내용
 - 기업의 예상 성장률 산정 방법론을 실제 사례 기반으로 한 Good Practice 가이드 제시
 - 예상 성장률에서의 기업 현실적 어려움과 지원 방안 마련
 - 협회의 온실가스 감축규제 대응활동 지원

2. 추진목적 및 필요성

- 목적
 - 대상기업의 Customizing된 예상성장률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 연구
 - 기존 기업 적용 방법론의 문제점 분석과 구체적 해결 방안을 연구하여 대상 개별 기업의 Customizing된 구체적 성장률 산정 관리방법론을 제시
 - 대상 기업의 성장률에 미치는 다양한 Factor 도출 및 영향력에 대한 정량적, 정성적 수치를 통계적 방법론을 통해 도출
 - 실제 사례기반의 Good Practice 가이드 제시
 - 기업의 예상 성장률 산정 방법론을 실제 사례 기반으로 적용하여 해당 주제에 대한 방법론이 타 기업의 성장률 산정에 Good Practice로 현

실적으로 활용 및 확산될 수 있도록 가이드 제시

- 성장률 개발에서의 기업 현실적 어려움과 지원 방안 마련
 - 성장률 개발에 있어서 기업 현황을 조사하여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어려움(비용, 관리기준, 신뢰성 확보 등)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그에 대한 지원 사항 제시

□ 필요성

- 기업 내부 관리측면
 - 예상 성장률 산정의 부정확성에 따른 비용 및 제도 대응에 대한 영향력이 큼
- 세부적이고 적합성 있는 성장률에 대한 기준 필요
 - 석유화학산업 특성에 따른 복잡성 및 다양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 가이드 필요
- 중소기업에 대한 관리적 측면 노하우 지원 필요
 - 석유화학산업 내 중소기업 규제 대응에 대한 관리 수준 고도화 필요

II. 과업내용

1. 주요내용

가. 사업범위

- 본 사업은 석유화학산업 내 대상 기업의 Customizing된 예상 성장률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을 연구하고 최종적으로 석유화학산업 내 다양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

- 1) 석유화학산업 내 대상 업체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기존 성장률 방

- 법론을 파악하고, 대상 기업 특성을 반영한 성장률 산정 방법론 제시
- 현황조사 대상 범위 정의 및 양식 개발, 성장률에 대한 기존의 산정 방법론 조사
- 2) 기업 현황 파악 및 분석을 위한 기초 데이터 확보
- 데이터 현황 조사 및 분석, 기초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DB화 수행
- 3) 통계적 기법을 통한 예상률 영향 Factor 파악 및 모델 방법론 선정
- 예상 성장률 영향 Factor 분석, 예상 성장률 모델 방법론 시나리오 도출
- 4) 검증 및 주요 고려사항 분석, 지원 필요사항 제시
- 모델 검증 및 최종 방법론 가이드 작성, 주요 고려사항 및 지원방안 도출

나. 추진 방법

- 한국석유화학협회에서는 회원사의 시범대상 사업장을 모집한 후, 기후변화 전문 컨설팅사와의 컨소시엄을 통하여 본 과제를 수행할 계획임
- 1) 협회 내 회원사 담당자 중심의 기후변화 대책반 추진
- 한국석유화학협회 내 회원사 담당자들을 모집하여, 석유화학산업 기후변화 대책반을 구성 및 해당 과제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유도함
- 2) 컨설팅사 선정 및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용역 추진
- 구성된 기후변화 대책반과 논의하여, 과제에 대한 세부 내용 검토 및 과제 추진을 위한 업체를 선정함

3) 과제 추진 및 관리

- 용역을 대행하는 업체와 협회간의 주기적 회의 및 과제 내용 관리를 통해, 과제의 품질관리 및 방향성을 제고함

4) 협회 내 회원사 담당자들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및 중간 및 최종검토

- 과제의 추진 내용 및 산출물에 대한 평가, 검토를 주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진행하며, 중간 및 최종 평가를 위한 회의 개최를 추진함

다. 협회 온실가스 감축규제 대응활동 지원

- 온실가스 감축정책 관련 정부의 다양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 사례 등 논리적 근거 지원

2. 추진일정

주요활동계획	추진 일정									비고
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	
사업계획 수립 및 설명회 개최 대상 기업 및 사업장 선정	■									
현황 분석 및 기존 방법론 분석		■								
기초 데이터 확보			■	■						
예상률 영향 Factor 파악 및 모델 방법론 선정					■	■				
중간점검 및 워크숍						■				
검증 및 주요 고려사항 도출							■	■		
최종보고								■		

중간보고

최종보고

Ⅲ. 행정사항

1. 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방식

□ 전문 용역기관과 지명경쟁계약에 의해 추진

- 석유화학 기후변화 대응 관련 수행실적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전문 컨설팅 용역기관을 선정

2. 과업수행자의 의무

□ 계약절차 관련

- 계약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한국석유화학협회 (이하 '석화협')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

- 입찰참가신청서 1부 (협회 소정양식)
- 가격제안서 1부 (협회 소정양식)
- 실적증명원('13년~'15년) 1부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인감증명서 1부
- 사용인감계 1부
- 입찰보증 보험 증권 1부(입찰제안금액의 5%)
- 기타

-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을 위해 다음의 서류를 석화협에 제출해야 함

- 과업수행세부계획서 1부.
-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.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
- 이행보증보험 1부.
- 보안각서 1부.
- 용역계약서 2부.

□ 수행절차 관련

- 용역수행 중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도록 계획에 반영하고 석화협에 통보하며,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석화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본 용역사업에 대한 수행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고해야 하며, 중간 및 최종보고회에는 회원사 시범사업장 담당자(또는 석유화학 기후변화 대책반 구성원 3인 이상)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받아야 하며 보고회 개최 이전에 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야 한다.
 - 점검보고회 : 매주 1회 수행성과 및 계획 보고
 - 중간보고회 : 계약일로부터 5 월 이내
 - 최종보고회 : 계약만료일 15일 이전
- ※ 보고회 일정은 석화협과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음
- 본 용역의 성과는 최종보고회 심의를 받은 내용을 최종 보완하고 계약만료 15일 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석화협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과업의 변경 및 조정 :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석화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석화협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.
- 지급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하며, 과업수행의 용역감독자의 확인된 산출물량에 따라 계약내역서 단가로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한다.

□ 과업수행조건

- 과업수행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며 보완규정을 준수하고, 과업수행계획서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과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- 자료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산출물의 결과를 작성하되,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

시행한다.

- 본 과업수행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,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.
-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성과물의 조사·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, 년도,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석화협에 제시한다.
- 과업수행 중 석화협과 과업수행자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상호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, 계약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석화협의 해석이 우선한다.
- 과업수행과 관련된 문제발생시 즉각 석화협에 통보한 후 상호협의를 거쳐 해결하도록 한다.
- 보고서 작성시 순서,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을 인쇄 전에 석화협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.
- 본 과제 수행과정을 통해 획득한 기술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석화협이 갖는다.

하자보수 및 책임관계

- 과업수행자는 최종성과물(보고서 등)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용역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간 무상으로 보수해야 한다.
- 과업수행자는 무상보수기간에 발생한 하자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
3. 성과물 제출

최종보고서 : 인쇄물 50부 (전자문서 별도 제출)

※ 성과물 제출양식 및 수량은 석화협과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음